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회계제도과
행정안전부	2018년 8월 3일(금) 조간 (8. 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종범 사무관 최교신
		연락처	02-2100-3528 02-2100-3542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

-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 운영요령은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① **공사의 일시정지**, ② **계약기간의 연장**, ③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④**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둘째,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및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노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였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 목적(배경)

○ 최근 기록적인 폭염 발생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발주기관의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 등을 위한 계약집행운영요령 마련

□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요령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75조, 제90조,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제7절, 제8절

○ (대상)

- 폭염경보 등 폭염이 지속(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각 구분별 사유에 해당되고 현재 계약하여 집행 중인 공사

구 분	적 용	비 고
일시정지	(사유)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방법) 공사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공사기간 연장	(사유) 공사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방법)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하도급 계약 연장 확인
작업시간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 휴일·야간작업 지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일시정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야간작업 등 작업 시간을 변경한 경우 (방법)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 비용 포함

□ 적용시기

○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징, 현장상태, 공사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별 즉시 시행